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5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에 따라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공고

1.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 사업내용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기술·서비스 실증비용 지원
- 지원규모 : 3개 내외 사업, 실증사업별 5억원씩 총 15억원 이내

2. 신청자격

- 기초지자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
- *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공모지침 참조

3. 신청방법

- 제출 일 : 2023년 4월 18일(화) ~ 5월 17일(수) 17:00까지
- 제출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산업지원센터(위탁기관)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 (dark@kaia.re.kr)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시 전자문서 발송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2, 3738) 또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현웅 수석(031-389-6367, dark@kaia.re.kr)

【별첨】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지침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안내서

2023. 4.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23년 공모 계획	4
III. '23년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안)	8
IV. 사업 관리	11
V. 유의 사항	14
첨부.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7

□ 추진 배경

- 도시운영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촘촘한 규제 제약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다수 부처의 복합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운영 중('20.2~)
- 제도 시행 2년여 동안 다양한 스마트도시 신기술 발굴·실증을 지원하였으나, 혁신기술·서비스의 전국 확산은 미흡
 - * 규제샌드박스 40건 승인, 규제신속확인 35건을 통해 166억원 투자유치 등 성과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의 실증지역 대부분(80%)이 기업의 실증편의성이 높은 국가시범도시와 수도권에 편중

구분	국가시범도시		수도권	기타	합계
	세종	부산			
승인건수	23	15	9	8	40
%	57.5%	37.5%	22.5%	20.0%	100.0%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요구사항은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규제특례 필요성 증대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 중 6건*이 솔루션 적용 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지역의 규제해소 수요도 지속 증가
 - * 수요응답형버스 3건(인천, 포항, 강릉), 합승택시(인천), 공유경제 플랫폼(부천), 에너지 거래(제주)
 -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 신도시수요대응(경기, 세종), 관광지원(강릉), 출퇴근수요대응(대구) 등 다양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형태로 운영 중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필요

□ 추진 방향

- (방향)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 해소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공모
 - 기초지자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실증대상 지역소재 기업과 함께 응모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
 - * 지역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기반 마련 지원
 - 지역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부여를 통해 스마트도시·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체감도 증대

<서비스 분야 별 지역주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예>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주요 솔루션	지역주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예
행정	스마트 민원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 특례
교통	수요응답형 버스	도심지 수요응답형 버스 허용
	AI 스마트신호등	실시간 신호제어 특례
보건·의료·복지	원격의료	지역 내 원격의료 허용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연계 서비스 허용, 개인정보 활용
환경·에너지·수자원	에너지 거래·공유	전기사업법 등 특례
	환경 리워드 서비스 (탄소배출권, 스마트 재활용 등)	지역화폐 연계 서비스 허용
시설물 관리	가스시설·교량 안전관리	드론활용 안전관리 허용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규제 특례
교육	맞춤형 비대면 교육 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 특례
문화·관광·스포츠	상권·유동인구 분석	영상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규제 특례
물류	로봇 물류배송	도로교통법 특례

- (기대효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해도 증대로 규제해소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기업의 실증편의 증대 기대
 - * 그간, 지자체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실증지자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
 -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기업에 대해서도 원스톱컨설팅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하여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술·서비스 발굴
 - * 신규 규제해소 소요 발굴 및 관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도 증대
 - 지방도시의 특화 혁신산업 경쟁력 증대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 의료·교육·행정 등 서비스 격차 해소 가능
 - * 비수도권 지자체 응모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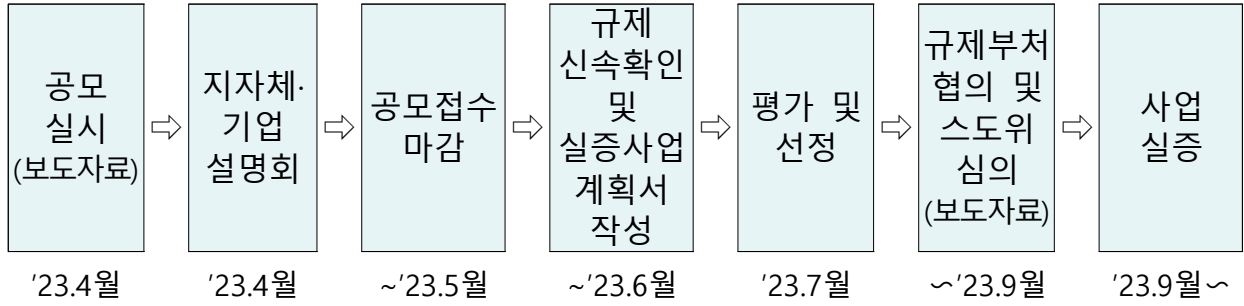
□ 공모 개요

- (사업명)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 (공모기간) '23. 4.18.(화) ~ 5. 17.(수), 30일간
- (접수기간) '23. 4.18.(화) ~ 5. 17.(수) 17:00까지, 전자우편 접수만 가능
- (지원내용)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술·솔루션 실증사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기술·서비스 실증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3개 사업 내외, 사업별 5억원 이내 지원
 - * 지원사업의 개수와 예산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 접수단계에서 제출한 규제신속확인 사업계획서(평균 5장 내외)를 바탕으로 규제 신속확인 후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추진
 - * 규제 있음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규제신속확인 없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지원 대상의 2배수(6개)를 선정(순위결정)하고 규제부처 협의,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추진
 - * (평가대상 10건 초과) 서면평가로 10건을 우선선정하고 발표평가로 최종선정 (평가대상 10~4건) 발표평가만 추진 (평가대상 3건 이내) 평가없이 심의 절차 착수
- 실증사업계획서에 대한 우수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평가 결과와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실증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예정
 - * 심의는 통과되었으나, 지역주도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기업주도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지원 추진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



□ 사업 공모 대상 및 방식

- (공모 대상) 지자체 주관으로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 * 지자체가 주관으로 참여하되 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접수 이후에도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변경 가능(단, 별도 공지한 실증사업계획서 제출기한까지로 한정)
- 규제로 인해 보유 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 사업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공모 분야 및 내용

-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솔루션(기술 또는 서비스)을 제시하고 해당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참여하여 자유롭게 제안

□ 사업 지원 규모 및 내용

- (과업내용)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술·솔루션 실증사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기술·서비스 실증
- (사업 수) 3개 내외
 - * 지원사업 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예산) 실증사업별 최대 5억원, 총 15억원 이내
 - * 사업별 지원 예산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국토부 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본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음
- (지원금 사용) 사업비 규제특례 내용을 감안한 솔루션 실증을 위해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의 비목으로 사용
 - * 세부 산정기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운영관리지침의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참조
- (참여기관 역할) 주관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주체	역할	비고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대상지 지원 - 실증을 위한 행정사항 지원(인허가 등) 	
실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을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 - 실증에 필요한 설치, 유지관리, 철거 등 - 실증을 위한 기업체 매칭 - 기타 규제사항에 대한 실증 전반 	
기타 공공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솔루션 검토 등 	필요시

□ 평가 방법

- (평가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접수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서면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 학회·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스마트도시 관련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비공개)
- (사전검토) 진흥원 사업담당자가 신청 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공모안내서와의 부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서면평가) 서면검토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위에 따라 10건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 일정 기준 미달 시(평가 점수 60점 미만) 또는 참석한 평가위원 과반수가 사업수행계획서가 지원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 시 탈락 처리
- (발표평가)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신청서별 최종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6건 선정
 - * 지자체 담당자 미발표 또는 발표평가점수 60점 미만의 경우는 탈락 처리
- (평가점수 산정)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중위평균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확정
 -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 (종합결과서) 선정평가위원회는 종합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의견과 최종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명기
 - * 평가의견 등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규제특례 심의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하고 후순위사업과 계약 추진 가능
- (가점) 가점은 평가 단계에서 중위평균점수에 가점을 부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사용
 - * 서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서면평가에 반영, 서명평가 미실시할 경우 발표평가에 가점 반영 예정

< 지역기업 가점 인정을 위한 기준 >

구분	가점 기준	가점
비수도권 신청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자체 신청시 2점	최대 3점
	실증대상 지역소재 기업과 함께 응모시 1점	

□ 평가 기준(안)

○ 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 필요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 적용 필요성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스마트도시 시행계획 및 지역특성사업과의 부합성 · 적용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 혁신성 및 차별성
계획의 구체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기술 및 서비스 적용 계획의 구체성 · 실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및 활용계획 · 지자체 협의 및 시민 참여 방안의 구체성 ·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화 및 파급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국내외 확산 방안(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 실증사업 추진 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합계	100 +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지자체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 실증대상 지역소재 기업과 함께 응모시 가점 1점 부여

부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사업수행계획서가 사업목적, 지원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 시 탈락 조치
--------	---

* 평가대상이 10건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실증 사업의 필요성	15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 적용 필요성 · 지자체 스마트도시 시행계획 및 지역특성 사업과의 부합성
실행 계획의 적정성	15	· 참여 및 협력기관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타당성 · 본 사업 추진 시 참여기관의 인력, 예산 투입계획의 구체성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20	· 제시된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 제시된 기술 실증·접목 방안의 타당성
실증 방안의 적절성	20	·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인프라 투자 계획 ·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정성 및 타당성 ·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주관 지자체 내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추진의지 및 역량	15	·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전략 방안 구체성 · 기술개발 및 실증 관련 추진 경험 및 역량의 우수성
사업추진 기대효과	15	· 제시된 성과의 혁신·우수성 및 지속가능성 · 실증사업이 해당 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 실증기술·서비스의 국내외 확산방안(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합계	100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대상이 3건 이하일 경우 서면 및 발표평가 생략

*** 서면평가 미실시에는 발표평가에 지자체 가점 부여

□ 계약 안내

-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신청기관은 진흥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 선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계획 변경

-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 진흥원 사업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
- 중요사항 변경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 사업 목표,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계좌 등 선정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사항

□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일정, 방법 등을 협의
- 사업수행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
 - *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본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 서류 등
-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불인정 금액, 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
-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1부 제출
- 진흥원이 정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게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반납금을 진흥원에 송금하여야 함
 - * 반납대상 : 총사업비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

□ 진도 관리 및 보고

- 정기 보고의 시기와 방법(예 : 월간)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착수보고 시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실태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확인 및 점검 예정
 -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등 실무자 면담과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위한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황 점검을 위한 진흥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사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약 되거나, 사업수행에 대한 검수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
 - 지원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성과물 소유권 및 기타 사항

-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실증사업결과보고서)은 사업종료시 진흥원에 제출하되, 기타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와 진흥원,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다만,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의 공유, 홍보 등을 위해 주무부처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 부스 운영 참여 등 협조해야 함
- 계약 종료 후에도 향후 1년간은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반드시 본 사업의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함
-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사업 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대상 서비스, 관련 규제사항, 지재권 확보여부, 관련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규제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제안서는 미지원)
-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목표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술적 성능, 사양 등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배정 가능

□ 기타 유의 사항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기관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제출 (dark@kaia.re.kr)
-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박현웅
수석연구원(031-389-6367)

참고

추진 절차 및 시기(예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3. 4.	•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시행	진흥원
↓			
신청서류 접수	~'23. 5.	• 신청서류 접수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사업 설명서 등	신청기관→진흥원
↓			
규제 신속확인	~'23. 6.	• 규제여부 확인 - 규제 소관부처	국토부→규제부처
↓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23. 6.	•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규제특례 심의용 사업설명서 작성	국토부→규제부처
↓			
선정평가 계획 수립	'23. 7.	• 선정평가 절차, 일정 등 계획 수립 및 안내	진흥원
↓			
사업 선정	사전검토	'23. 7. • 사업담당자 사전검토 - 신청서류 적합성 등	진흥원
	서면평가	'23. 7. • 서면평가 실시하여 10건 선정 - 평가대상 10건 미만일 경우 미실시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3. 7. • 발표평가 실시하여 최종 지원 대상 2배수(6건) 선정 - 평가대상 4건 미만일 경우 미실시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보고·통보	'23. 7.	• 국토부에 결과를 보고 • 선정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	진흥원
↓			
규제특례 심의	'23. 9.	•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부처 협의, 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등	국토부, 진흥원
↓			
계약 체결	'23. 9.	• 사업계획서 보안 및 계약체결	진흥원↔선정기관
↓			
사업 시행 및 관리	'23. 9.~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진흥원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 서류	비 고
1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 공문 (지자체)	-
2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원본(대표자 직인 날인) 1부	서식 1
3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1부	서식 2

※ 주 :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되, 사업설명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서식 1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양식]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내용		
소관 부처 및 기관 (선택적 기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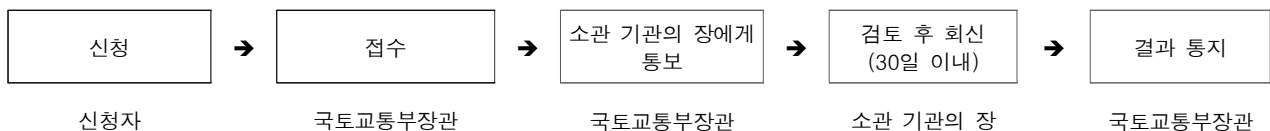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해당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양식]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설명서

목 차

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	0
1.1 사업 개요	0
1.2 사업 내용	0
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	0
2.1 법·제도 이슈 사항	0
2.2 기타 질의 사항	0

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

1.1 사업 개요

[작성방법]

1.1 신속확인사업 개요 ※ 어떤 서비스(what)를 누구(to whom)에게 어떻게(how) 제공하는지 설명

- 신속확인을 신청하는 기술·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요 설명
 - 기술·서비스의 개략적인 개념 설명 작성
 - 기술·서비스 구축방안 또는 제공방안 작성
 - 기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을 포함하여 설명 포함
 -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 필수 첨부

[작성예시]

- VR 러닝머신 테마파크 설치
 - 유원시설업종인 테마파크에 VR(Virtual Reality) 기기를 설치하여, 러닝머신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사업
 - 유령의 집에서 쫓아오는 괴물을 VR 러닝머신에서 뛰는 동작을 통해 피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 VR 러닝머신 활용 미니 축구게임을 만들어 이용객을 모아 가상현실 축구장 구현

○

-

*

서비스 개념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이미지, 다이어그램) 필수 첨부

[서비스 개념도]

1.2 사업 내용

[작성방법]

1.2 사업 내용 (자유분량) ※ 신속확인 사업의 목적, 범위, 대상, 기간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내용
 - 신속확인을 받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서비스 내용 작성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등 구축방안 작성
- 사업지역
 - 사업추진 및 서비스 제공 지역범위 작성
 - [사업지역 범위]에 지도자료로 사업지역 범위 표시
- 사업대상
 -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작성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역할을 구분하여 작성
- 기타 설명사항
 -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등 첨부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사업지역 범위]

사업대상

○

기타 설명사항

○

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

2.1 법·제도 이슈 사항

[작성방법]

2.1 신속확인 신청내용 (자유분량)

- 신속확인을 받을 규제에 대한 구체적 신청내용
 - 확인하고자 하는 규제사항의 법적 논점을 법령별로 작성

[작성예시]

- VR 러닝머신 유원시설업 진출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
 - 당해 조항에서 정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

*

2.2 기타 질의 사항

[작성방법]

2.2 기타 질의 사항

-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술
 -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 등을 모를 경우,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서술

○